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7. 11 선고 2024나201049 판결 [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7. 11 선고 2024나201049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12. 21 선고 2022가단99411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조민영

피고, 피항소인 1.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영

2. C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영

3. 주식회사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박경수

변론종결 2024. 6. 13.

판결선고 2024. 7. 11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12. 21. 선고 2022가단9941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주위적 청구

원고에게, 피고 주식회사 B은 111,472,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9. 3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, 피고 C 주식회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라.

나. 예비적 청구

원고에게, 피고 주식회사 B,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111,472,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9. 3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, 피고 C 주식회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,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와 같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우석, 판사 박재형, 판사 정욱도